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신원식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보정훈병과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병과이며 공보정훈병과의 主 임무가 정신전력교육임을 쏠 병과원이 인식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임무와 역할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병과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현재 군인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보정훈병과의 명칭을 정훈병과로 개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~ 12.) 예정

3) 부패영향평가 등 요청 :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(병과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육군 : 보병과(步兵科), 기갑과(機甲科), 포병과(砲兵課), 방공과(防空科), 정보과, 공병과(工兵科), 정보통신과, 항공과, 화생방과, 병기과(兵器科), 병참과(兵站科), 수송과, 인사과, 군사경찰과, 재정과, 정훈과(精訓科) 및 군수과
2. 해군 : 함정과(艦艇科), 항공과, 정보과, 정보통신과, 병기과, 보급과, 공병과, 조함과(造艦科), 재정과,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. 다만, 해병대는 보병과, 포병과, 기갑과, 항공과, 정보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군수과, 재정과,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.
3. 공군: 조종과(操縱科), 항공통제과, 방공포병과, 정보과, 군수과, 정보통신과, 기상과, 공병과, 재정과, 정훈과,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

제18조의2(병과장 임명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육군 : 방공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항공과, 화생방과, 병기과, 병참과, 수송과, 인사과, 군사경찰과, 재정과, 정훈과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

2. 해군 : 항공과, 정보과, 정보통신과, 병기과, 보급과, 공병과, 조함과, 재정과, 정훈과, 군사경찰과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. 다만, 해병대는 기갑과, 항공과, 정보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군수과, 재정과,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.
3. 공군: 정보통신과, 기상과, 공병과, 정훈과, 군사경찰과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병과)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육군 : 보병과(歩兵科), 기갑과(機甲科), 포병과(砲兵課), 방공과(防空科), 정보과, 공병과(工兵科), 정보통신과, 항공과, 화생방과, 병기과(兵器科), 병참과(兵站科), 수송과, 인사과, 군사경찰과, 재정과, <u>공보정훈과(公報正訓科)</u> 및 군수과 2. 해군 : 함정과(艦艇科), 항공과, 정보과, 정보통신과, 병기과, 보급과, 공병과, 조함과(造艦科), 재정과, <u>공보정훈과</u> 및 군사경찰과. 다만, 해병대는 보병과, 포병과, 기갑과, 항공과, 정보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군수과, 재정과, <u>공보정훈과</u>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.	제2조의2(병과)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육군 : 보병과(歩兵科), 기갑과(機甲科), 포병과(砲兵課), 방공과(防空科), 정보과, 공병과(工兵科), 정보통신과, 항공과, 화생방과, 병기과(兵器科), 병참과(兵站科), 수송과, 인사과, 군사경찰과, 재정과, <u>정훈과(精訓科)</u> 및 군수과 2. 해군 : 함정과(艦艇科), 항공과, 정보과, 정보통신과, 병기과, 보급과, 공병과, 조함과(造艦科), 재정과, <u>정훈과</u> 및 군사경찰과. 다만, 해병대는 보병과, 포병과, 기갑과, 항공과, 정보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군수과, 재정과, <u>정훈과</u>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.

현행	개정안
3. 공군: 조종과(操縱科), 항공통제과, 방공포병과, 정보과, 군수과, 정보통신과, 기상과, 공병과, 재정과, <u>공보정훈과</u>,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제18조의2(병과장 임명) ①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육군 : 방공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항공과, 화생방과, 병기과, 병참과, 수송과, 인사과, 군사경찰과, 재정과, <u>공보정훈과</u>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 2. 해군 : 항공과, 정보과, 정보통신과, 병기과, 보급과, 공병과, 조함과, 재정과, <u>공보정훈과</u>, 군사경찰과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. 다만, 해병대는 기갑과, 항공과, 정보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군수과, 재정과, <u>공보정훈과</u>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. 3. 공군: 정보통신과, 기상과, 공병과, <u>공보정훈과</u>, 군사경찰과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	3. 공군: 조종과(操縱科), 항공통제과, 방공포병과, 정보과, 군수과, 정보통신과, 기상과, 공병과, 재정과, <u>정훈과</u>,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제18조의2(병과장 임명) ①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육군 : 방공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항공과, 화생방과, 병기과, 병참과, 수송과, 인사과, 군사경찰과, 재정과, <u>정훈과</u>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 2. 해군 : 항공과, 정보과, 정보통신과, 병기과, 보급과, 공병과, 조함과, 재정과, <u>정훈과</u>, 군사경찰과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. 다만, 해병대는 기갑과, 항공과, 정보과, 공병과, 정보통신과, 군수과, 재정과, <u>정훈과</u> 및 군사경찰과로 한다. 3. 공군: 정보통신과, 기상과, 공병과, <u>정훈과</u>, 군사경찰과, 의무과, 법무과 및 군종과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기획관리과	
연 락 처	02-748-5121